

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- 검토 보고 -

□ 개정이유

- 지방행정의 기구·조직 개편이후 법의 개정·보안 및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읍·면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읍·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
-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,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와 기구명칭 일치(안 별표)
 『민방위재난관리분야』를 『자치행정분야』로 사무분야 명칭 변경
-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대상의 개정(안 별표)
 - 폐지분야 내용 -
 - 문화공보 : 공연신고
 - 종합민원 : 도시계획구역내 100㎡이하 건축허가 (증축)처리
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(가,나,다)
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신고의 접수에 따른 착공신고
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접수 및 처리
 - 사회복지 : 묘지에관한사항 일부 (다. 분묘이장신고,
 사. 공설묘지 지형변경허가)
 - 보건 : 전염병 발생신고

- 신설분야 내용 -

- 문화공보 : 영화상영의 신고
- 종합민원 : 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리 및 사용검사(다항)
- 사회복지 :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허가(2~7)등
- 산업 : 농지전용신고의 수리,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
- 지역경제 :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(변경신고 및 폐지신고)
- 건설 : 군도의 도로점용허가

□ 참고사항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읍·면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읍·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위임사무를 폐지 및 신설하는 것은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,
- 읍·면장에게 권한 위임되는 문화공보 분야외 3개 분야의 폐지내용과 종합민원 분야외 5개 분야의 신설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과 직접 이해 관계가 많은 분야이니 만큼 읍·면장 및 업무담당자의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이해와 주민의 권리행사를 가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
- 신설 분야의 사무를 읍·면에 위임하므로 인하여 업무의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업무의 부담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, 읍·면 위임사무를 조정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와 행정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읍·면장으로 하여금 많은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